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72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황운하 · 박은정 · 차규근
신장식 · 이성윤 · 백선희
이상식 · 주철현 · 김형연
이강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성인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실종자로 관리되지 못하고 경찰 내부규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실종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신속한 수색과 소재확인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 권한뿐만 아니라 실종신고의 접수, 위험성 평가, 사건의 지속적인 관리, 실종자의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 등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상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담당

경찰공무원이 실종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관리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수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후 동일한 사람에 대한 재신고 과정에서도 종전 사건의 종결기록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등 현행 실종사건 처리 체계의 제도적 공백이 확인되었음.

실종사건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사고, 재난, 자해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부터 위험성 평가, 수색, 발견,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에 이르는 경찰 대응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 중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종신고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연령 또는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즉시 위험성을 평가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일정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함.

특히 실종자의 신원 및 생명·신체의 안전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의 단독 종결을 금지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종사건의 임의적·부당한 종결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재신고를 보장하고, 실종사건의 최초 기록부터 정정·추가·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실종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재확인 또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경찰관서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성년 여부,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또는 종전 사건의 종결 여부 등을 이유로 실종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실종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실종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일정 기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실종자로 지정하거나 수색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마. 특정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종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특정실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실종자의 안전확인은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대면이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대면확인 또는 영상통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연락 시도·전화 연결 또는 위치확인만으로는 안전확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이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

건종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종결된 실종사건의 안전확인이나 종결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실종사유가 발생하거나 종전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 사건의 종결 사실이나 처리내용만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실종사건의 처리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을 정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과 변경자·일시·사유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종결 등을 이유로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자의 신고·수색·발견·안전확인 및 실종사건의 관리·종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그 생명·신체 및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그 발견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정실종자”란 실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재확인 또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범죄의 피해로 인하여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사고·재난 등에 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자해 또는 자살의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라. 연령·장애·질병 또는 심신의 상태로 인하여 스스로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마. 실종장소·실종시간·기상상황·실종 전후의 행동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할 때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이란 경찰관서에 실종자의 발생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4. “안전확인”이란 실종자의 신원, 생존 여부 및 생명·신체의 안전 여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개인위치정보”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6. “이동경로정보”란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나. 철도·버스·항공·선박 등 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정보

다. 자동차의 도로·주차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

라. 전자적 지급수단의 사용 장소와 시간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실종자의 수색 및 발견

3. 실종사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4. 실종자의 안전확인
5. 실종사건의 관리 및 종결에 대한 감독
6. 실종사건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실종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의 교육
8. 그 밖에 실종자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본원칙) ① 실종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실종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실종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발적으로 가족·신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과 연락하지 아니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실종자의 신고·위험성 평가·수색·발견·안전확인 및 실종사건의 관리·종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보호·복귀 및 복귀 후 지원,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유전자검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실종아동등의 위험성 평가, 안전확인, 사건종결, 종결사건의 재검토 및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실종신고 및 사건관리

제6조(실종신고의 접수) ① 누구든지 실종자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실종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는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실종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실종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실종자가 성년인 경우
3. 실종자가 자발적으로 주거지 등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동일인에 대한 종전의 실종사건이 종결된 경우
5. 신고인이 실종자의 가족 또는 친족이 아닌 경우

④ 경찰관서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제7조에 따른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자정보시스템) ① 경찰청장은 실종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종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종자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1. 실종신고 및 사건처리 경과
2. 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 결과
3. 담당 경찰공무원 및 관리책임자
4.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에 관한 사항
5. 정보의 등록·정정·추가·삭제 등 변경이력
6. 그 밖에 실종사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변경이력은 변경 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실종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실종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실종자를 특정실종자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수색 및 발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종전의 평가와 다른 사정이 확인된 경우
 3. 일정한 기간 동안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위험성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실종자로 지정하거나 수색 인력·범위·방법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의 기준·시기·방법과 특정실종자의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담당자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담당할 경찰공무원과 그 사건을 관리·감독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의 적정성
2. 수색·발견조치의 적정성
3. 수색 진행상황
4. 안전확인의 적정성
5. 사건종결의 적정성

③ 담당 경찰공무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경과와 관련 자료를 인계하고 그 사실을 실종자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실종자의 수색 및 발견

제10조(실종자의 수색)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실종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수색
2. 신고인·가족·지인 및 관계인에 대한 사실 확인
3. 관계기관·시설 등에 대한 사실조회 및 자료제공 요청
4.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된 영상의 확인
5. 경찰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한 수색
6. 그 밖에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 또는 그 밖의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자료를 일정기간 보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와 보존기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삭제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존 요청의 방법·절차·기간 및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수색 및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실종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소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특정실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특정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의 요건·방법·절차 및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실종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소재 또는 이동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가 보유한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2. 여객운송사업자 등 교통수단의 이용정보를 보유한 자
3. 도로 · 주차시설 등의 관리 · 운영자
4.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전자적 지급수단의 이용정보를 보유한 자
5.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자
6. 그 밖에 이동경로정보를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특정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제공 요청의 방법 · 절차 · 범위 및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통제)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은 특정실종자의 생명 · 신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요청의 내부 승인절차, 필요성 · 상당성의 확인 및 그 밖에 정보제공 요청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의 정보를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공받은 경우에는 실종자를 발견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실종자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16조(공개수색 및 실종경보) 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특정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진·인상착의·마지막 목격장소 등 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종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특정실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된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청하고 실종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공개수색 및 실종경보의 요건·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실종자의 수색·발견·안전확인 또는 사건처리의 적정성 검증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색의 계속) 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수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위험성, 수색기간, 수색결과 및 새로운 정보 등을 고려하여 수색방법과 범위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다른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실종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실종자의 발견 및 안전확인

제19조(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가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사건을 수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의 개시 또는 사건의 인계를 이유로 실종자의 발견 및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③ 실종사건 담당부서와 수사부서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실종자의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수집 또는 피의자의 추적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실종자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건강상태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응급의료, 임시보호, 정신건강·자살예방상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③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실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고인 또는 가족과의 연락 여부 등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확인 방법) ① 실종자의 안전확인은 경찰공무원이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여 신원 및 생명·신체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대면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의 직접 대면 확인이나 영상통화 등 실종자의 신원 및 생명·신

체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실종자에 대한 단순한 연락 시도, 전화 연결 또는 위치의 확인만으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안전확인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및 관계기관 간 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실종사건의 종결 및 재검토

제22조(사건종결의 요건)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라 실종자의 신원 및 생명·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2. 실종자의 사망 사실 및 신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3.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신고대상자가 실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② 신고인의 신고취소 또는 사건종결 요청, 실종자와의 단순한 연락 여부, 실종자의 소재 확인, 시간의 경과 또는 다른 기관·부서로의 사건 인계만을 이유로 실종사건을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건종결의 세부적인 기준·절차 및 관계기관 간 안전확인·협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사건종결의 승인) ①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은 실종사건을 종결하

려는 경우 사건처리 경과, 안전확인 결과 및 사건종결 사유 등을 포함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은 실종사건의 종결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③ 사건종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책임자가 종결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종결보고서의 작성·관리와 종결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종결사실의 통지 및 소재정보 보호) ①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연락처 또는 그 밖에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신고인이나 가족에게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실종자가 반대하지 아니하고 실종자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실종자가 가정폭력·스토킹·학대·성폭력 또는 그 밖의 범죄로부터 피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종결사건의 재검토) ① 신고인 또는 실종자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종결의 재검토

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사건종결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가 확인된 경우
3. 실종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사건종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종결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③ 재검토 결과 사건종결이 부적정하였거나 실종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재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종결된 사건의 대상자에 대하여 새로운 실종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종전의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실종신고를 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는 종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종전 사건의 처리 내용만을 이유로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재검토 및 재신고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장기미발견 실종사건의 관리) ① 실종자를 장기간 발견하지 못하

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장기미발견 실종사건에 대하여 실종자의 발견 가능성과 새로운 정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토의 대상·주기·방법 및 신원불상 사망자 등에 관한 정보와의 대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실종사건 기록의 관리) ① 경찰청장은 실종신고, 위험성 평가, 수색,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 등 실종사건의 처리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정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내용, 변경한 사람·일시 및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건이 종결되거나 실종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처리 기록 및 변경이력을 임의로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록 및 변경이력의 종류·보존기간·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사건기록 및 관리·감독

제28조(실종사건 처리실태의 점검) ① 경찰청장은 실종사건의 부당한 종결을 방지하고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실태를 정

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주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경찰청장은 실종신고, 특정실종자의 지정, 실종자의 발견 및 미발견, 사건종결·재검토·재신고, 장기미발견 실종사건 등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교육) 경찰청장은 실종사건을 담당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위험성 평가, 수색·발견, 개인정보 보호,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적용에 관한 특례) 경찰관서에 종사하였던 사람도 재직 중

취득한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동경로정보를 제17조를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 중인 실종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서에서 처리 중인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결된 실종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결된 실종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실종사건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경찰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실종사건 관련 기록은 제27조에 따른 실종사건 기록으로 본다.

②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생성된 실종사건 기록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정정·추가·삭제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는 기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실종자정보시스템에 관한 준비행위)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및 제27조의 시행에 필요한 실종자정보시스템의 구축·개편, 변경이력 관리기능의 마련,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 평가 및 사건종결 절차에 관한 준비행위) 경찰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 제9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 제21조에 따른 안전확인 및 제23조에 따른 사건종결 승인 등에 필요한 기준·절차와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중인 실종아동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고, 위험성 평가·안전확인·사건종결·재검토 및 사건기록의 관리에 관하여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